

관악학생생활관 연수생 수용 지침

제 1조 [목적]

학내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원활히 이행하여 정규 입사생 외 사람(이하 외부인)을 수용함에 있어서,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악학생생활관 입주생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[수용 조건]

- ① (기간) 수용 가능 기간은 하계, 동계 방학 관악학생생활관 개사 기간으로 한다.
- ② (인원) 수용 인원은 관악학생생활관 정규 사생이 퇴거(임시퇴거 포함)하여 발생하는 여석에 한한다.
- ③ (호실) 입주 호실은 관악학생생활관 사정에 따라 임의 배정한다.

제 3조[이용자 요건]

- ① (행사 주관 기관) 서울대학교 학내 기관이나 서울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참석 인원 이어야 한다.
- ② (협조 공문 발송기간) 행사 주관 기관은 하계는 6월 셋째 주, 동계는 12월 셋째 주까지 관악학생생활관 측으로 행사 개요와 숙박 총 인원을 첨부한 협조공문 발송하여야 한다.
- ③ (입주 대상자 기초정보) 행사주관 기관은 입주 대상자들의 기초정보를 (이름, 휴대폰 번호, 집전화번호 등) 입주 15일 전까지 관악학생생활관으로 발송하여야 한다.

제4조 [경비]

① (이용 요금)

(단위 : 원)

구 분		2인실(1인당)	비 고
재정생활관	하계	14,000	
	동계	16,000	
BTL생활관	하계	17,000	
	동계	19,000	

* 관악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② (납부 기간) 이용료는 입주 3일 전까지 관악학생생활관 계좌로 입금 시켜야 하며, 미 입금 시 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5조[입주 및 퇴거]

- ① (입주 시간) 입주 시간은 동조교 근무시간(월~금 13:00~17:00)으로 한다. 단, 입주 대상자의 피치 못 할 사정으로 동조교 근무시간 외에 입주할 경우에는, 사전에 해당 동조교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구해야 한다. 이 경우에도 동조교가 입주를 위하여 대기하는 총 시간은 최대 3시간을 넘지 못한다.
- ② (입주 절차) 주관기관 담당자 혹은 조교 인솔하에 배정받은 동조교에게 입주 절차를 밟는다.
- ③ (퇴거 시간) 퇴거 시간은 12:00전으로 한다.
- ④ (퇴거 절차) 퇴거 시에는 입실 시와 같은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시설물, 카드키 등의 손 • 망실에 대한 최종 책임은 행사 주관단체에 있다.

제 6조[생활]

- ① (방배정) 2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사생과 룸메이트가

될 수 있다.

- ② (소지품) 침구류, 세면도구 등 개별 물품은 개인이 지참하여야 한다.
- ③ (규정 준수) 입주절차를 마친 외부인은 관악학생생활관 정규 입주생과 동일하게 “관악학생생활관 입주생 포상 및 징계 지침”을 준수해야 한다.
특히 동내 소란행위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삼가 한다.
- ④ (외부인 관리) 외부인의 일정 및 생활관리는 주관 기관 담당자 혹은 인솔자가하며,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외부인(본인)이 책임진다.
- ⑤ (시설 사용) 외부인은 기존 입주생과 동일하게 매점, 식당, 세탁장 및 기타 관악학생생활관 복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 7조[위약금 및 환불]

- ① (위약금 및 환불) 입주일 전 입주 취소 시에는 위약금 10%를 공제하고 환불하며, 입주일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.
- ② (환불 기간) 사용료 환불은 하계는 9월 첫째 주, 동계는 3월 첫째 주에 일괄 환불한다.

제 8조[기 타]

- ① (신의 성실) 학내 각 기관은 상호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성실히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(사용 제한) 위 규정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관악학생생활관 관장 재량으로 추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.